

8-10.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



위기지역내 중소기업이 지정기간내 사업전환을 하면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

지원 대상

- 다음의 위기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 속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

1. 고용위기지역²⁸²⁾
2. 고용재난지역²⁸³⁾
3.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²⁸⁴⁾
4. 인구감소지역²⁸⁵⁾

지원 내용

- 지원대상 중소기업이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기간 내에 사업전환²⁸⁶⁾을 위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고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%를 경감,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전환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% 감면

유의사항

- 감면된 취득세 추징
 -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
 - ②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·증여하는 경우
 - ③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·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

282) 「고용정책 기본법」 제32조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고용위기지역으로 「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」 제29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·고시하는 지역

283) 「고용정책 기본법」 제32조의2 제2항

284) 「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 제1항

285)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

286) 「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

-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
-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유지하면서 새로이 추가된 업종의 사업비중이 새로운 업종 시작후 3년 이내에 총매출액의 30% 이상이 되거나 상시근로자수가 총근로자수의 30% 이상으로 늘어나는 경우

- 최저한세 해당사항 없음
- 농어촌특별세 비과세

관련 법령

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75조의 3, 「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35조의 3